

정정신고(보고)

2024년 9월 4일

1. 정정대상 공시서류 : 집합투자규약

삼성퇴직연금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 제1호[주식]

2.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: 2009. 04. 17

3. 정정 사유

- S클래스 정의 변경

4. 정정요구 · 명령관련 여부: 아니오

5. 정정사항

항 목	정정전	정정후
제20조 (수익증권의 판매기준 · 판매가격, 판매수수료 등)	<p>① 수익증권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한다.</p> <p>4. Sp클래스 수익증권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 수익증권</p>	<p>① 수익증권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한다.</p> <p>4. Sp클래스 수익증권: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 (S-T 및 S-P클래스 포함)를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 없이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(가입자격(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)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) 보다 판매보수가 낮은 수익증권</p>
부칙	(신설)	제1조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24년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. (S클래스 정의 변경)